

의안 번호	회 의 차 수	회 의 일 자	제 의 자
제 55 호	제 30 차	1988.12. / .	총재 김 건

의 안 :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정

의결사항 :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의관계 법규조항 : 한국은행법 제7조 및 은행법 제30조의 2

제의취지 : 여신관리제도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참 고 : 제의관계 법규조항(발췌)

한국은행법 제7조

- ① 한국은행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
-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은행법 제30조의 2

-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동일계열기업군 단위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동일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정내용

- 동일계열기업군의 결정기준 변경

- o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을 제한함으로써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87년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업집단의 범위와 출자총액한도를 규정하였음
- o 상기 법률 개정시 기업집단의 범위는 당행의 기존 '동일계열기업군 결정 기준'을 근간으로 마련하였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여신관리제도상의 결정기준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으나 부분적으로는 차이가 있음
- o 따라서 규제받는 계열기업군의 혼란을 방지하고 관리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별표 2> '동일계열기업군 결정 기준'을 폐지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일계열기업군 및 소속기업체를 결정하고자 함

系列企業群 範圍 比較

区 分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金融機關 與 信運用規程
同一系列企業群의 範圍	o 同一人이 事實上 支配하는 法人企業	o 同一人이 事實上 支配하는 法人企業과 個人企業
法人企業	o 同一人이 株式持分の 30% 以上 所有	o 同一人이 株式持分の 30% 超過 所有
個人企業	—	o 同一人이 企業의 主要財産 所有 等
特殊關係人	o 親族 o 事實上 支配하는 法人, 非營利法人, 組合, 団体 o 使用人	o 親族 o 事實上 支配하는 法人, 非營利法人, 組合, 団体 o 使用人 (非營利法人, 組合, 団体の 使用人은 除外)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	비고
제1조 ~ 제2조 (생략)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여신의 금지) 금융기관이 (별표 1)의 "여신금지부문"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불건전한 여신으로 본다. 다만,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는 여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여신의 금지) 금융기관이 (별표)의 "여신금지부문"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불건전한 여신으로 본다. 다만,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는 여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별표 2)의 삭제에 따른 자구수정
제4조 (생략)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대상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제한) ①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총여신이 1,500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이하 "대상기업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업체(이하 "대상기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여신취급을 가급적 억제하고 이의 재무구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하 "은행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대상기업군을 (별표 2)의 "동일계열기업군 결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제5조 (대상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③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하 "은행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대상기업군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선정하고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 "동일계열기업군 결정기준"을 폐지하고 관계법령 준용
제6조 ~ 제12조 (생략)	제6조 ~ 제12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1989.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략)	(별표) (현행 '별표 1'과 같음)	○ (별표 2)의 삭제에 따른 자구수정
(별표 2) (불 일) 694	(삭제)	○ "동일계열기업군 결정기준" 폐지

동일계열기업군 결정기준

구 분	내 용
동일계열기업군의 범위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모든 법인 기업과 비법인기업(개인기업)
I. 법 인 기 업	1. 다음에 계기하는 방법으로 동일인의 그 법인기업에 대한 주식지분(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이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사실상 그 법인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가. 자기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 동일인의 그 법인기업에 대한 주식지분이 100분의 30 이하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일인이 그 법인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가. 동일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해당기업체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경우 나. 기업공개로 주식분산이 이루어져 지배주식이 100분의 30 이하이지만 대주주로서 사회통념상 당해기업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II. 비법인기업 (개인기업)	다음에 계기하는 방법으로 동일인이 그 개인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1. 자기의 명의로 그 기업재산의 주요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그 기업재산의 주요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구 분	내 용
친족의 범위	3. 자기나 친족이 외부에 대하여 그 기업을 대표하는 경우 4. 표면상 제3자의 명의로 경영하고 있으나 동일인이 그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은행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8촌 이내의 혈족 3.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은행감독원이 주식지분 또는 재산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동일계열의 기업을 지배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은 친족의 범위에서 제외
특수관계인의 범위	1. 자기 또는 친족이 각각 또는 합계하여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법인 및 동 법인의 <u>임원</u> 2. 자기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자기로부터 받은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그 자의 친족으로서 이러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3. 자기 또는 친족이 재산을 출연하였거나 임원이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조합, 단체

〈참고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항 〉

이 법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제1항에 규정한 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의 집단을 말한다.

1.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2.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1986. 12. 31 본항신설)

[동 법 시행령]

〈 제2조의 2 〉 [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 제2항에서 "동일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한한다)이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거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법 제7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회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다만, 주식 또는 재산의 소유관계등에 비추어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동일인 및 동일인과 제1호에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였거나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
3. 동일인 및 제1호, 제2호에 규정한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4. 동일인 및 제2호, 제3호에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 임원, 개인인 경우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1987. 4. 1 본조신설)

企業集團(同一系列企業群)의 判定基準 對比

- 同一인이 單獨으로 또는 特殊關係인과 合하여 一定比率
以上の 持分을 所有하는 企業

区 分		独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金融機關 与 信運用規程
特 殊 關 係 人	親 族 (G 1)	配偶者, 8 寸以內的 親族, 4 寸以內的 인척	左 同
	非營利法人, 組合, 団体 (G 2)	本人 및 G 10이 任員의 過半數占有, 출연금의 50%以上 出資, 設立者	本人 및 G 10이 任員, 出資, 其他의 方法으로 支配
	会 社 (G 3)	本人, G 1, G 2가 30%以上 出資	本人, G 10이 30% 超過 出資
	使用人	本人, G 2, G 3의 使用人	本人의 使用人, G 3의 任員 및 기타 使用人
持 分		30%以上	30%超過
対象 企業体		法人企業体	法人企業体, 個人企業体